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주 업종			
	기업유형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개시일			
		[] 법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주	생산물		
	항목명								
	창업 이력 유무		[] 없음			[] 있음			
대표자	기업명	대표자	기업 유형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산업분류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개시일	폐업일	비고
	창업		☐ 개인 ☐ 법인			☐ 계속 ☐ 휴업·폐업			
* 대표자 창업 이력 정보는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 사실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